



비경제활동인구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합리화 필요

최창희 연구위원

요약

■ 최근 들어 대형 안전사고 발생으로 손해배상책임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용노임이 소득기준으로 사용되고 연 5%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함.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인 일용노임은 해외에서 사용되는 급여노동자 평균임금에 비하여 낮은 기준이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배상액이 실제 손해의 기대값보다 낮게 정해지도록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배상책임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대형 안전사고 발생으로 배상책임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는 비경제활동인구¹⁾의 불합리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배상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제5차 경제자문회의는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 등 형사·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금년 8월 26일).²⁾
- 그러나 인구의 54%³⁾를 차지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문제점은 논의되지 않고 있음.

1) 비경제활동인구는 미취학아동, 학생, 주부, 무직자 등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일정한 소득기준이 없는 사람을 뜻함.
 2) <http://www.neac.go.kr/news>
 3) 2010년 센서스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17,491,134명, 15세 이하 인구가 8,888,761명, 총 인구 수는 48,580,293명임.

■ 본고는 배상책임의 합리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경제활동인구의 손해배상액 중 일실이익(逸失利益)⁴⁾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비경제활동인구 소득기준인 일용노임은 급여노동자 평균임금을 소득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개인차를 인정해 주는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기준은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의 기대값보다 낮게 산정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피해자가 사고로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된 이익인 일실이익은 소득기준, 가동연령⁵⁾을 고려한 호프만 계수⁶⁾와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됨.⁷⁾

- 사망과 장애에 대한 일실이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됨.⁸⁾
 - 사망의 일실이익 = 소득기준×가동연령을 고려한 호프만 계수 - 생활비
 - 장애의 일실이익⁹⁾ = 소득기준×노동능력상실률¹⁰⁾×가동연령을 고려한 호프만 계수
- 일실이익 계산에서 소득기준은 피해자의 경제활동 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됨.
 - 급여 소득자는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 중 피해자가 기여한 부분, 즉 사업 소득 중 각종 경비를 제외한 부분을 일실이익으로 인정
 - 학생, 미취학 아동, 주부, 일용노임자, 무직자 등 소득기준이 일용노임보다 적거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일용노임¹¹⁾을 기준으로 함.
 - * 일용노임은 피해자의 거주지역(도시, 농촌)과 성별(남, 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
 - * 대학생의 경우 전공이나 졸업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일용노임 이상의 기준 적용 가능
- 가동연령은 피해자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연령으로 20세부터 개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남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통상 2년)을 가동연령에서 제외
 - 정년이 보장된 직업의 경우 정년 인정, 일용노동자의 경우 60세를 가동연령 종료시점으로 인정, 특수직·전문직은 직업별 특성 인정¹²⁾

4) 일실이익이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미래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임.

5) 경제활동을 통하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기를 뜻함.

6) 호프만식은 단리식 현재가계산방법이고 복리식인 라이프니츠 방법이 쓰이기도 함. 호프만식이 피해자에게 유리함.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4521&cid=40942&categoryId=31721> 참조.

7) 본고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특수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본고와 다른 판결이 가능함.

8) 장중운(2014), 『최신 손해배상실무』, ISBN: 9788963463544, 진원사, pp. 54 참조.

9)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함.

10) 장중운(2014), pp. 85 참조.

1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통계청 농가구입가격지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 2013년도 4/4분기 일용노임은 남자(93,507원), 여자(61,915원), 장중운(2014) 참조.

- 실무에서 월 급여 산정을 위한 월 노동일수는 22일임(농촌의 일용노무자는 월 25일).
 - 2013년도 일용노임을 소득기준으로 일용노무자 연간 수입은 남(2,400만 원), 여(1,600만 원)

■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국내 일실이익 산정 기준은 외국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음.

- 조사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피해자와 유사한 특징(성별·연령·지역·학력 등)을 가지는 집단의 평균 소득을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으로 인정하고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차를 인정함.
 - 미국은 피해자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집단의 평균 소득을 소득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인차¹³⁾, 주부 가사노동의 가치, 물가 상승률 등을 소득기준에 반영함.
 - 영국은 아버지의 수입을 자식의 소득기준으로 인정하는 등 개인차 인정
 - 일본은 성별 전 연령 급여노동자 평균임금을 주부, 학생, 아동의 소득기준으로 함.
 - 중국은 지역별 평균소득을 소득기준으로 인정하는데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를 고려하여 농촌은 수입을, 도시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일용노임을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기준은 외국에 비하여 낮은 것임.
 - 일용노임이 기준이 된 것은 과거 충분한 통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을 일용노임으로 결정한 판례에 의한 것임.

〈표 1〉 국가별 비경제활동인구 일실이익 산정 시 소득기준 비교

국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한국
일반적 기준	피해자가 속한 집단의 평균임금, 개인차 인정	피해자가 속한 집단의 평균임금, 개인차 인정	성별·학력별 평균임금 인정	지역별 평균소득을 인정, 단, 농촌은 수입으로 도시는 가처분소득으로 함	일용노임

자료: 법원행정처(2007. 2), 『외국사법제도연구(1) -각국의 인신사고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발간등록번호: 32-9740029-000079-14, LSC종합법률사무소 웹사이트¹⁴⁾, 동경변호사회변호사연수센터일동운영위원회(2012), 交通事故訴訟における典型後遺障害と損害賠償実務, ISBN: 4324094667, ぎょうせい 미래종합법률사무소(2010), 民事交通事故訴訟の実務-保険実務と損害額の算定, ISBN: 4324088055, ぎょうせい, <http://www.chinalawedu.com>.

■ 일용노임을 소득기준으로 할 경우 손해배상액이 피해액의 기대값보다 낮아져 공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12) 변호사·법무사 70세, 의사 65세, 보육교사 57세, 간호학원 강사 65세, 목사 70세, 암자(불교) 경영자 60세 등.
 13) 부모의 직업과 부(副), 학업 성취도, 지역, 성별, 인종 등.
 14) <http://www.koutuujikobengo.jp>

-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에서와 같이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생이 사망한 경우 일용노임이 소득기준으로 사용되어 손해액의 기대값과 실제 배상액에 차이가 발생함.¹⁵⁾
 - 일용노임 기준 연소득 2,400만 원은 경제활동 남자인구 연 평균임금인 3,453만 원¹⁶⁾의 69% 수준이므로 이는 경제활동의 기회를 갖기 전에 사망한 피해자의 미래 수입을 기대값보다 31% 낮게 책정하는 것임.
 - 이렇게 낮게 책정된 소득기준은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1억 3천 2백만 원의 차이를 발생시킴.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연 5% 이자율은 최근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¹⁷⁾
 -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 3%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5억 8천 3백만 원) 5%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4억 7천 7백만 원)보다 1억 6백만 원 손해배상액 증가

〈표 2〉 소득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

구분	연 소득기준	손해배상액 (5% 이자율, 현행)	손해배상액 (3% 이자율)
일용노임 기준(현재)	2,400만 원	3억 4천 5백만 원	4억 1천 9백만 원
평균임금 기준(합리화)	3,453만 원	4억 7천 7백만 원	5억 8천 3백만 원
차이	1,053만 원	1억 3천 2백만 원	1억 6천 4백만 원

설명: 남자 고등학교 2학년생이 17세가 되는 시점에 사망한 경우 22세부터 소득이 발생하고 60세까지 468개월간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일용노임과 평균임금을 소득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액을 비교, 기대소득 현가에서 1/3을 생활비로 공제한 후 사망 위자료 4천만 원과 장례비 5백만 원을 받는 경우를 가정하였음. 실제 손해액은 보험회사의 보상관련 약관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일실이익 산정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소득기준을 일용노임으로 하는 것은 외국에 비하여 낮은 기준이며 손해배상액을 실제손해액의 기대값보다 낮게 책정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현행 일용노임 기준을 급여노동자 평균임금으로 상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손해율 산정에서 이용되는 연 5% 이자율은 비현실적이므로 이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 손해배상책임 강화는 경제주체에게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손해배상책임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배상책임보험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kiri**

15) 손해액은 가정에 따라 다소 달리질 수 있음.
 16) 통계청(2013),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참조.
 17) 높은 이자율은 손해액을 낮춤.